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7호

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"http://www.eum.go.kr/"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설과(☏051-309-469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2월 1일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

가. 도로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53	10	국지도로	57	화명동 384-1	화명동 391-4	일반도로	-	2022.4.6. (북구 고시 제2022-49호)	-
변경	소로	1	53	10	국지도로	57	화명동 384-1	화명동 391-4	일반도로	-		선형 변경

○ 결정(경미한 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1-53호선	소로1-53호선	■ 경미한 선형변경 L=57m, B=10m	■ 잔여 도로부지 활용 및 편입 토지 최소화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

2. 관련도면 : 게재 생략(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. 끝.